

의안번호	2220852
의 퇴 인	김소희의원
회 답 일	2026.9.18.
추 계 번호	26B4425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정부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를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6,000만원 (연평균 3,2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기후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100	—	—	—	—	100	20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 제25조)	12	12	12	12	12	60	12
추가재정소요	112	12	12	12	12	160	32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기본계획의 내용 및 위원회의 위원 수·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후테크산업에 관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후테크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항)	
3	안 제7조(기후테크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을 분야별로 둘 이상의 기후테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9조(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기후테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테크노파크, 창업지원기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기존 지역 혁신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0조(기후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해당 여부 및 기후테크가 창출하는 기후성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1조(기후테크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창업·성장 및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항) 1. 기후테크기업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및 사업전환 지원 3.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실증 및 시장진입 지원 5.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지원 6.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7.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테크기업의 창업, 성장 및 사업전환을 지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3항)	
8	안 제12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의 기술사업화, 사업전환, 실증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4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의 선점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다. (제1항) 정부는 전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제3항) 1. 전략사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전략사업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증 및 운영실적 확보 지원 3. 신기술 도입 및 공정 전환에 따르는 사업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보증 지원 4.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기반의 조성 5.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용 책임보험 가입 및 컨설팅 지원 등 6. 제28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등 혁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7. 공공구매, 시범구매 및 초기시장 창출에 필요한 지원 8. 해외실증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전략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략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재량규정
10	안 제17조(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정부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초기 실증단계 또는 장기간의 투자회수기간이 필요한 기후테크 분야에 대하여 정책금융, 보증, 후속투자 연계 등 위험분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테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금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18조(연구개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테크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19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테크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항) 1. 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사업 2. 대학·대학원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산업현장 연계 교육 및 재직자 교육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충 5. 수도권 외 지역의 기후테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의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기후테크 전문인력의 취업, 연구개발 참여,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3조(교육·연구기반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1. 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산업현장 연계 연구 및 교육 3. 기후테크 연구성과의 실증 및 사업화 4. 기술이전 및 창업 5.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6. 국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15	안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후테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석 4. 기후테크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5. 국제표준 및 해외인증에 관한 지원 6. 기후테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문 7. 해외투자 유치 및 현지 사업화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안 제25조(기후테크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제28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2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제3항) 1. 심의 대상이 되는 기후테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제28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기후테크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17	안 제26조(기후테크 옴부즈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후테크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테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둔다.(제1항)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8항)	의무규정 재량구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등을 참고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	·미첨부 제3호 - 안 제6조에 따른 기후테크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안 제7조 에 따른 기후테크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안 제10조에 따른 기후가치 평가 제도의 개발·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각 사업의 구체 적인 추진 여부와 사업 범위,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지원방 식과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7조(기후테크진흥 원의 설치 및 운영)		
4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 정 및 운영)		
6	안 제10조(기후가치평가 에 대한 지원 등)		
5	안 제9조(지역 기후테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 미첨부 제3호 - 안 제9조에 따라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의 지정 규모 및 운영방식, 정부의 지원 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경기환경에 너지진흥원을 기후테크센터로 지정하여 연간 8개 사업을 12 억 6,000만원 규모로 운영 중임 [참고자료 1] 참조
7	안 제11조(기후테크기업 의 창업 및 성장지원)	×	· 미첨부 제3호 - 안 제11조부터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기후테크 창업 활 성화, 사업화, 전략사업 육성 및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별 지원대상 및 추진 규모, 지원방식과 지원수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 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2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9	안 제14조(기후테크 전략 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11	안 제18조(연구개발 지원 등)		
10	안 제17조(금융지원)	×	· 미첨부 제3호 - 안 제17조에 따라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지원 및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한 보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 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 및 보증의 대상·규모와 지원방식, 보증한도 및 보증비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 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19조(세제 지원)	×	· 미첨부 제3호 - 안 제19조에 따라 혁신기업의 연구개발·실증 및 상용화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및 사업의 범위, 지원방식과 지원수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	· 미첨부 제3호 -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 대학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및 사업 규모, 교육·연구시설 확충 여부, 지원방식과 지원수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17개 분야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실시 중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244억 7,900만원임[참고자료 2] 참조
13	안 제23조(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14	안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미첨부 제3호 - 안 제24조에 따라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국제교류, 전시회·학술회의, 해외 현지 실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별 추진 여부와 대상·규모 및 지원수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5	안 제25조(기후테크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등을 참고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16	안 제26조(기후테크 옴부즈만)	×	· 미첨부 제3호 - 안 제26조에 따라 기후테크 옴부즈만과 이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회의 개최 횟수, 조직·인력 규모 및 지원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를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을 기획연구’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¹⁾
 -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을 기획연구’ 용역에 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6.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9.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2]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을 기획연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021.11. ~ 2022.3.	100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환경 조사·분석 ·그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전략 및 정책 조사·분석 및 성과 분석(최근 10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핵심 이슈 발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안) 제시 ·기후변화대응 관련 관계기관 협업 및 의견수렴(산·학·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가 간 담회 개최, 관련 연구자 설문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8년에 실시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제정안에 따라 5년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를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원 (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100	-	-	-	-	100	20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및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 제25조)

- 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유사사례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²⁾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준용함
 - (위원 수)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학계, 전문가 등 총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개최 횟수) 회의 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분기당 1회 개최)를 준용하여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참석수당 30만원³⁾)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읍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12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기본계획의 내용 및 위원회의 위원 수·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사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일	2026년 2월 12일
설립근거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운영 형태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기후테크센터로 지정하고, 기후테크 지원사업 및 운영비 등을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며 진흥원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팀을 신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 산하 공기관으로 매년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도에서 진흥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후테크팀 사무에 따른 인건비 또한 진흥원 내에서 출연금을 활용해 지급
전담인력	8명
주요업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후테크 정책지원 등
26년 사업 예산	8개 사업 /12억 6천만원 기후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통계조사, 유망기후테크지원사업, 기후분야 청년일자리 교육사업,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얼라이언스 운영, 센터 운영 등

[참고자료 2] 특성화 선도대학 개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필요성)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위한 녹색산업 전환에 따라 녹색기술 개발·녹색산업 육성에 필요한 중급 인재 양성 시급

- * 향후 5년간 7.7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급 인력이 4.88만 명(69.7%)으로 매우 부족(에코업 분야 인력수급전망 결과, 고용부, '23)

단위: 명	수 요	공 급			수급차 (공급-수요)	수급배수 (수요/공급)
			정부·민간	대학		
에 코 업	92,300	15,300	3,500	11,800	-77,000	6.03
초 급	7,800	5,400	2,500	2,900	-2,400	1.44
중 급	56,300	7,500	1,000	6,500	-48,800	7.51
고 급	28,200	2,400	-	2,400	-25,800	11.75

* 초급(특성화고·전문대 졸), 중급(대졸), 고급(석·박사)

- (청년 진출) 높은 성장력과 잠재력을 지닌 녹색산업*에 청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재학생 구직단계부터 기업 수요 높은 특성화분야 전문지식 습득 기회 제공으로 청년 역량 강화 필요

* (시장규모) 1조2천억\$로 반도체 시장(4천3백억\$)보다 3배 더 큰 규모('20년)

- (인프라 활용) 既 구축된 특성화대학원의 교육 역량(교원, 인프라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체계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협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사업내용) 석·박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의 교육과정,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대졸 중급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비학위과정 운영

* (협업 전)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 → (협업 후) 석·박사 고급인재 + 대졸 중급인재 양성

- '27년까지 특성화대학원 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며, '25년에는 8개 대학에 비학위과정 신설·운영(총 240명)

* ('25년) 7개 분야 8개 대학 → ('26) 13개 분야 30개 대학 → ('27) 13개 분야 50개 대학